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427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2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 국장 곽석철(6573) **의무팀장** 박일현(6540) 팀원 김경덕(6582) E-mail : kam008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 - 13046호

시행일자 2026. 3. 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1351(2026.3.3.)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의료기관 내 종업원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한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,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출입을 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가.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6조(마약류의 저장)

- 마약류,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장소는 마약류취급자,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, 마약류,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,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

나.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의2(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)

-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·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
- 종업원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
※ 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